

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부 칙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~제2조 (생 략)	제1조~제2조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제2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제3조~제10조(생 략)	제3조~제10조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16-1142호 관악구 난곡동 굴참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(안) 공람공고

서울특별시 관악구 「난곡동 굴참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(안)」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공람합니다.

2016년 9월 13일

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

- 가. 공람기간 :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30일간
나. 공람장소 : 관악구청 도시계획과(☎ 879-6371)
다. 공람공고 : 구보 및 관악구청 홈페이지(<http://www.gwanak.go.kr> → 고시·공고)
라. 공람의견 제출장소: 관악구 도시계획과(☎ 879-6371)
마.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(안)
1. 정비구역 지정

구 분	구 역 명	위 치	면 적(㎡)			비고
			기 정	변 경	변경후	
신규	난곡동 굴참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	관악구 난곡로31길 및 35길 일원	-	증)51,398.1	51,398.1	-

2. 정비계획(안) : 붙임참조
바. 관계도서 : 공람장소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
사. 본 정비계획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

-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아.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악구 도시계획과(☎ 879-6371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

주거환경관리구역 결정도

